

서울특별시교육청 취업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I. 회부경위

가. 의안번호 : 제3285호

나. 발의자 : 정지웅 의원

다. 발의일자 : 2025년 10월 20일

라. 회부일자 : 2025년 10월 23일

II. 제안이유

- 제2조(적용 범위) 제3호는 산업(문화예술)정보학교 중 본 조례의 적용 제외학교를 열거하고 있음
- ‘서울온라인학교’ 가 신설되어 적용 제외학교에 추가됨에 따라 동 조항을 개정해야 하나, 현행 문장은 제외학교가 추가될 때마다 매번 개정해야 하는 구조임
- 이에 제외학교를 열거하는 방식을 변경하여 정비함으로써 반복적인 개정으로 인한 행정력 낭비를 예방하고자 함

III. 주요내용

- 제2조(적용 범위) 제3호 산업(문화예술)정보학교에 대한 적용범위를 정비함

IV. 참고사항

1. 관계법령 : 「서울특별시교육청 공립학교 설치 조례」
2. 예산조치 : 비용추계 비대상 사유서 참조
3. 입법예고 : 2025. 10. 28. ~ 11. 1.(의견: 없음)

V. 검토 의견(수석전문위원 박광선)

1. 제안경위 및 주요내용

- 동 개정조례안은 2025년 10월 20일 정지웅 의원에 의해 의안번호 제3285호로 발의되어 2025년 10월 23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 동 개정조례안은 제외학교가 추가될 때마다 매번 개정해야 하는 조항을 정비하여 반복적인 개정으로 인한 행정력 낭비를 예방하고자 발의되었습니다.

2. 주요 검토의견

- 동 조례는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제7조의3에 따라 취업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제정·시행되고 있습니다.
- 제2조에서는 적용 범위를 규정¹⁾하고 있으며, 특히 제3호는 '산업(문화예술)정보학교'를 적용 범위에 포함하면서, 「서울특별시교육청 공립학교 설치 조례」 제3조의 별표 6에 규정된 각종학교 중 산업(문화예술)정보학교에 해당하지 않은 학교(서울다솜관광고등학교, 오디세이학교)를 열거하여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 그러나 최근 산업(문화예술)정보학교에 속하지 않은 '서울온라인학교'가 신설되며 제외 대상 학교가 추가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기

1) 「서울특별시교육청 취업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적용 범위) 다음 각 호의 학교에서 직업교육훈련을 받고 있는 학생(이하 "직업교육훈련생"이라 한다)의 취업지원 등에 관하여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0조제1항제10호에 따른 학교
2. 특성화고등학교: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1조제1항에 따른 학교
3. 산업(문화예술)정보학교: 「서울특별시교육청 공립학교 설치 조례」 제3조에 따른 별표 6의 각종학교 중 서울다솜관광고등학교와 오디세이학교를 제외한 학교

위해 안 제2조를 개정하고자 하나, 현행과 같은 열거 방식은 제외학교가 추가될 때마다 반복적으로 개정해야 하는 한계가 있습니다.

[표-1] 「서울특별시교육청 공립학교 설치 조례」에 의한 각종학교²⁾

구 분	교육지원청	자치구명	명 칭	비고
본청 (9교)	서부	마포구(1교)	아현산업정보학교	산업정보학교
		은평구(1교)	은평문화예술정보학교	문화예술정보학교
	중부	종로구(3교)	종로산업정보학교	산업정보학교
			서울다솜관광고등학교	제외학교
			오디세이학교	제외학교
	강남서초	서초구(1교)	서초문화예술정보학교	문화예술정보학교
	동작관악	관악구(1교)	서울산업정보학교	산업정보학교
	남부	금천구(1교)	금천문화예술정보학교	문화예술정보학교
	성동광진	성동구(1교)	서울온라인학교	제외학교 (신규)

- 이에 제외학교를 일일이 열거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적용 대상 학교를 고정적으로 규정하는 방식으로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표-2] 「서울특별시교육청 취업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개정 전후 비교표

	제외학교 열거	개정 후
제2조 (적용범위) 제3호	산업(문화예술)정보학교: 「서울특별시교육청 공립학교 설치 조례」 제3조에 따른 별표 6의 각종학교 중 서울다솜관광고등학교, 오디세이학교, 서울온라인학교를 제외한 학교	산업(문화예술)정보학교: 「서울특별시교육청 공립학교 설치 조례」 제3조에 따른 별표 6의 각종학교 중 산업정보학교, 문화예술정보학교 명칭이 있는 학교

- 이러한 정비를 통해 제외학교 추가 시 반복 개정해야 하는 행정적 부담을 줄일 수 있으며, 이는 행정 효율성을 높이는 긍정적인 입법 조치라 할 수 있습니다.
- 참고로 서울시교육청은 동 개정조례안과 관련하여 별도의 의견이 없는 것으로 제출하였습니다.(행정관리담당관-13602, 2025.10.30.)

2) 「서울특별시교육청 공립학교 설치 조례」 제3조에 따른 별표 6

- 이상으로 「서울특별시교육청 취업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안심사지원팀장	정진국(2180-8263)	입법조사관	김명신(2180-8269)
----------	----------------	-------	----------------

관 계 법령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약칭: 직업교육훈련법)

[시행 2025. 10. 1.] [법률 제21065호, 2025. 10. 1., 타법개정]

제7조의3(취업지원센터 설치·운영) ① 교육부장관 및 시·도교육감은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현장실습 지원, 취업역량강화 등 직업교육훈련 활성화를 위하여 취업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 ② 교육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취업지원센터 운영을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 ③ 시·도교육감은 제2조제2호에 따른 직업교육훈련기관 또는 시·도교육청에 취업지원센터를 설치할 수 있다.
- ④ 시·도교육감이 설치한 취업지원센터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도의 조례로 정한다.

서울특별시교육청 공립학교 설치 조례

[시행 2025. 9. 1.] [서울특별시조례 제9704호, 2025. 7. 17., 일부개정]

제3조(시립학교의 명칭과 위치) 교육감이 설치하는 시립학교의 명칭과 위치는 별표1부터 별표7과 같다.

[별표 6] 각종학교 명칭 및 위치(제3조 관련)

구 분	교육지원청	자치구명	명 칭	위 치
본청 (9교)	서부 (2교)	마포구 (1교)	아현산업정보학교	마포구 마포대로 249
		은평구 (1교)	은평문화예술정보학교	은평구 가좌로 208
	중부 (3교)	종로구 (3교)	종로산업정보학교 서울다솜관광고등학교 오디세이학교	종로구 종로58길 28 종로구 종로58길 30 종로구 종로58길 30 (승인동)
		강남서초 (1교)	서초문화예술정보학교	서초구 남부순환로347길 69
		동작관악 (1교)	서울산업정보학교	관악구 신림로 67
	남부 (1교)	금천구 (1교)	금천문화예술정보학교	금천구 남부순환로126길 25
	성동광진 (1교)	성동구 (1교)	서울온라인학교<신설 2025.1.9.>	성동구 왕십리로 199